

## 미국 해군 상대 사기공모혐의자 구속



**연**방법무부는 해군 항공모함의 엘리베이터 장비에 사용되는 변형합금을 납품하는 버지니아주(州)의 하도급업자가 해군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혐의로 구속됐다고 발표했다.

해군에 납품되는 변형합금과 관련된 이번 사건은 독점금지국이 처리한 사건 중 처음 발생한 유형이다. 버지니아 주에 거주 중인 토드 모지먼(Todd M. Mosiman)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노퍽(Norfolk) 지방법원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적어도 2004년 6월과 2005년 3월 동안 체서피크(Chesapeake)에 회사를 설립해 16만 7,000달러의 부당수입을 올렸다.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해군과 최대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인물로, 엘리베이터 장비와 계약 수주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 인물은 해군에 필요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데 사용되는 변형합금을 포함한 제품들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또한 그는, 해군에게 납품업자를 추천하고 해당 계약을 추진하는 일을 도맡고 있었으며, Mosiman의 회사 공동 소유주이기도 했다.

이들은 변형합금 납품과 관련된 해군과의 계약에서 얻는 부당이익을 서로 분배해왔다.

모지먼과 공범자들은 납품업자를 임의로 조직하고, 그 납품업자가 해군과의 변형합금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또한, 공동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해군과의 계약에서 나오는 부당이익을 나눠 가지기도 했다.

독점금지국의 크리스틴 바니(Christine A. Varney) 차관보는 “우리 납세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해군을 기만한 자들에게 세금을 내고 있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전쟁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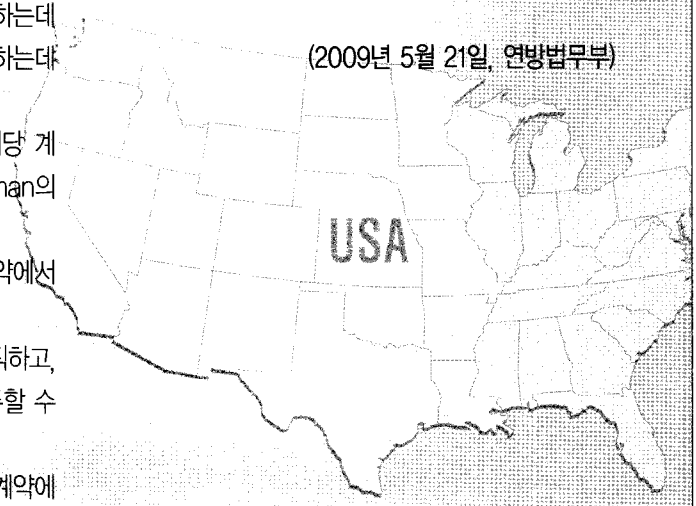
모지먼은 이번 사건의 유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건 판결은 법원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판결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모지먼은 사기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5년의 구금형과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범죄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그로 인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손해액의 2배가 제시된 최대 벌금보다 높은 경우는 벌금 액수를 증액할 수 있다.

(2009년 5월 21일, 연방법무부)



◆◆◆ 미국 ◆◆◆

## 前 미시건주 교육감 뇌물수수혐의로 기소



**미**시건주(州)의 대배심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E-Rate 프로그램과 관련해 하청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미시건주 교육감을 기소했다. 전 미시건주 교육감은 미시건주의 E-Rate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시건주의 그랜드래피즈(Grand Rapids) 지방법원에 의해 결정된 기소내용에 따르면, 브래들리 한센(Bradley J. Hansen)은 1993년 10월과 2003년 1월 1일 사이에 Montcalm Area Intermediate School District의 교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와 3년 간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계약을 맺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6만 달러에 상응하는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았다. 3년 간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계약은 총 160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계약은 2001년경부터 시작해 2004년 6월 14일 까지 계속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미시건주 서부지역의 학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한센은 2007년 9월 법원의 E-Rate 프로그램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독점금지국 크리스틴 바니 차관보는 "독점금지국은 이번 기소를 통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개인이라도 차단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독점금지국은 개인의 이득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전 학교장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학교와 도서관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연방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E-Rate 프로그램은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제정됐다. 비영리로 진행

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정부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인터넷과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부족한 학교와 도서관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점금지국의 E-Rate 프로그램 관련 수사 결과, 총 7개 기업과 18명의 개인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7개 기업에는 벌금이 부과됐는데, 벌금과 배상액은 총 4,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13명의 개인에게는 구금형이 선고됐는데, 이번 기소 건에서는 최대 5년의 구금형과 함께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범죄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그로 인해 손실을 본 피해자들의 손해액의 2배가 제시된 최대 벌금보다 높을 경우는 벌금 액수가 증액될 수 있다.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의 켄트 닐슨(Kent Nilsson)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독점금지국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이번 수사 결과 E-Rate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기와 낭비, 오용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공적인 이번 수사 결과로 인해 미국 내에서의 E-Rate 프로그램을 보호할 수 있었으며, E-Rate 프로그램이 미국 내에 위치한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다"면서 "독점금지국은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그 누구라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2009년 6월 2일, 연방법무부)

## 사기 및 탈세혐의로 홈디포 前 직원 구속



**홈** 디포(The Home Depot)와 관련한 사기행위 및 세금탈세혐의로 구속된 앤터니 테스비치(Anthony M. Tesvich)가 리처드 스토리(Richard W. Story) 지방판사의 판결에 의해 6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해졌다.

변호사인 데이비드 나미아스(David E. Nahmias)는 “피고인 테스비치와 공범자들은 전국의 외부 납품업자들에게 홈디포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를 해왔고 그 보상으로 뇌물을 받았다. 이번 비리사건은 공정하게 경쟁하는 납품업자들과 홈디포, 그리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후의 패배자는 비리와 탈세를 저지른 자들이다. 그들은 지금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독점금지국 크리스틴 바니 차관보는 “부적절한 중개료와 뇌물은 미국에서 정직하게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에게 막중한 피해를 준다”면서 “독점금지국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적절한 중개료를 받는 개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신뢰를 확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범죄수사관 레지나엘 맥다니엘(Reginael D. McDaniel)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번 판결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려는 개인들에게 확실하게 경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논평했다.

2008년 6월 30일 유죄를 선고받은 테스비치에게는 6년 6개월간의 구금형과 출소 후 3년간의 감시가 선고됐으며, 손해배상금 829만2,949달러가 청구됐다. 또한 사기행위로 벌어들인 자산이 몰수된다.

법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테스비치가 홈디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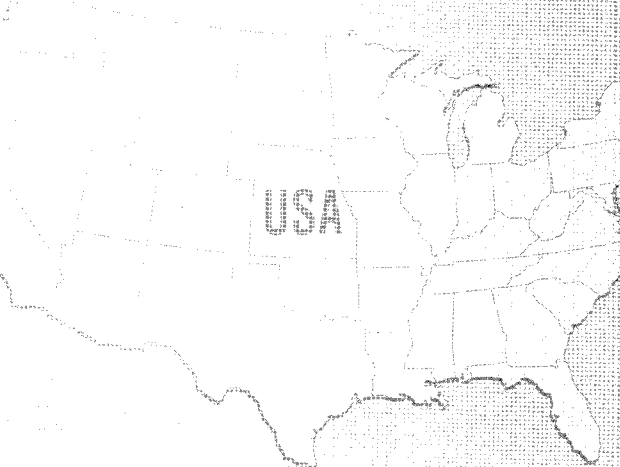
서 일하고 있던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 기간 동안 홈디포와 사업을 함께 하려는 납품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테스비치는 납품업자들에게 전국에 영업망을 갖춘 홈디포 매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해왔던 것이다.

테스비치는 홈디포를 퇴사할 당시에 공모자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나눠 주었는데, 한 공모자는 고급 SUV 자동차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테스비치는 2003년과 2004년, 2005년에 걸쳐 각각 21만 2,936달러, 82만 1,981달러, 38만 6,997달러의 탈세를 저지르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6월 11일, 연방법무부)



● ● ● ● E U ● ● ● ●

## 인텔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10억6,000만유로 벌금 부과 ①



**E**U위원회는 인텔의 유일한 경쟁업체인 AMD의 제보에 따라 착수된 불법행위의 조사결과, 인텔에 대해 유럽협정 위반혐의로 10억 6,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위원회는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칩인 x86 CPUs를 제공하는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협약을 맺어 경쟁업체들을 강제적으로 배제시킨 인텔에 대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인텔은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2월 기간 동안, 세계 x86 CPUs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시장의 70% 점유)에 있었다.

위원회는 인텔이 두 가지의 불법행위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인텔은 컴퓨터 생산업자가 x86 CPUs를 인텔에서 구매할 경우에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지불액을 할인해 주었으며, 주요 소매업체들이 인텔의 x86 CPUs를 장착한 컴퓨터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변제해 주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는 소비자들이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

둘째, 인텔은 경쟁업체의 x86 CPUs의 출고를 방해, 지체시키거나 판매경로를 의도적으로 제한할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가격을 변제해주는 등 경쟁업체의 생산능력을 저해함으로써 경쟁성과 혁신능력을 저하시켰다.

x86 CPUs시장은 매년 약 220억 유로에 달하고 있으며, 유럽시장은 총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EU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인 닐리 크뢰스

(Neelie Kroes)는 "인텔은 경쟁업체를 컴퓨터 칩 시장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수많은 유럽인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이는 EU 반독점금지법을 크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인텔의 '조건적인 가격할인'으로 인해 주요 컴퓨터 생산업체들은 인텔이 생산한 컴퓨터 칩을 전부 구매하거나 거의 대부분을 구매할 경우 지불액을 할인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컴퓨터 생산업체 A사에게 2002년 12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인텔 CPUs를 전적으로 구매한다는 조건 하에 가격을 변제시켜 주었다.
- 컴퓨터 생산업체 B사에게 2002년 11월에서 2005년 5월까지 95%의 데스크톱 PC에 인텔 컴퓨터 칩을 장착할 경우에 가격을 변제시켜 주었다(5%는 인텔의 경쟁업체인 AMD의 컴퓨터 칩 사용).
- 컴퓨터 생산업체 C사에게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80%의 데스크톱 PC와 노트북에 인텔 컴퓨터칩을 장착할 경우에 가격을 변제시켜 주었다.
- 컴퓨터 생산업체 D사에게 2007년 동안 인텔이 컴퓨터칩을 전부 구매하는 조건으로 지불액을 할인해 주었다.
- + 2002년 10월과 2007년 12월 사이에 주요 소매업체인 Media Saturn Holding에게 인텔 컴퓨터 칩을 장착한 컴퓨터를 전 세계적으로 판매해 줄 경우에 가격을 변제시켜 주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됩니다.

## 인텔의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10억6,000만유로 벌금 부과 ②



가격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독점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의 가격할인은 경쟁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차단할 수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기업이 가격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컴퓨터 생산업체들은 인텔의 CPUs 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경쟁업체들의 x86 CPUs의 시장 진입은 현저하게 제한받고 있다.

인텔의 가격협약에 의하면 AMD CPUs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컴퓨터 생산업체들은 인텔의 가격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텔의 컴퓨터칩을 선택하는 방법 밖에 없다.

또한, 인텔의 가격할인정책과 경쟁하기 위해 여타 생산업체들은 컴퓨터 칩이 생산비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컴퓨터 칩을 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예를 들면, 경쟁 업체인 AMD에서 100만 개의 CPUs를 한 컴퓨터 생산업체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지만, 해당 업체는 인텔이 제공하는 혜택을 잃을 것이 두려워 16만 개의 CPUs만을 무료로 제공 받았다.

인텔의 가격할인은 경쟁업체들의 경쟁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한했으며, 이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된 것이다.

인텔의 '특정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할 경우의 할인 정책'은 컴퓨터 생산업체와 AMD 사이의 거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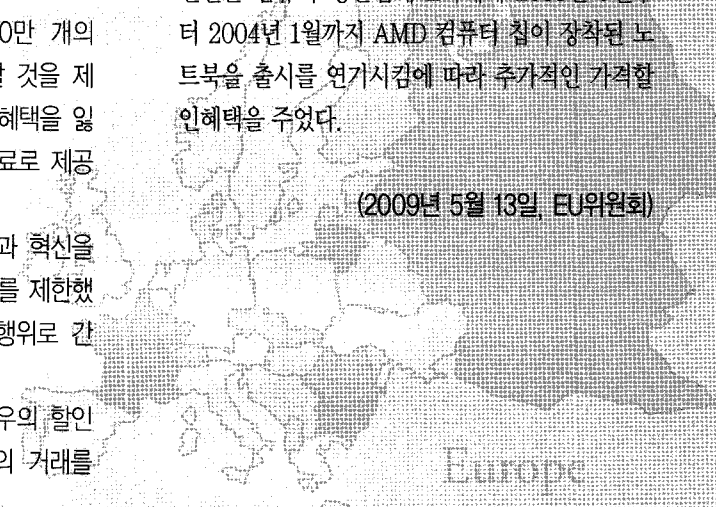
직접적으로 방해했다.

인텔은 AMD의 출고를 방해하거나 제품의 분배를 제한할 경우, 컴퓨터 생산업체에게 가격을 변제해 준 행위도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제품 출시를 막는 행위다.

위에 언급된 컴퓨터 생산업체 B사가 생산하는 컴퓨터의 5%에 AMD CPUs를 사용한 것은 인텔의 가격할인혜택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아니었지만, 인텔은 다음과 같은 생산 활동을 할 경우는 추가적인 가격할인혜택을 제공했다.

- AMD 컴퓨터 칩은 오직 소규모 시장에만 제공한다.
- AMD 컴퓨터 칩이 장착된 데스크톱 PC는 제한된 경로에 따라 제공된다.
- 유럽에 판매될 AMD 컴퓨터 칩이 장착된 데스크톱 PC의 출고를 6개월간 늦춘다.
- 인텔은 컴퓨터 생산업체 E사에게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AMD 컴퓨터 칩이 장착된 노트북을 출시를 연기시킴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할인혜택을 주었다.

(2009년 5월 13일, EU위원회)



◆◆◆ E U ◆◆◆

## MS의 윈도우 7에서의 웹브라우저 분리공급계획 주목



**E**U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C)에 판매 예정인 윈도우 7(Window 7)에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IE)를 분리 공급할 것이라는 계획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MS의 웹브라우저 IE의 '끼워 팔기'가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즉, MS의 끼워팔기가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면, 소비자 선택의 권리 확립과 MS의 장기간에 걸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위원회가 마련한 잠정적 개선안에는 소비자에게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MS의 웹브라우저 자체를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컴퓨터 생산업자와 소매업체 수준에서의 반대안(Statement of Objection, 이하 "SO"라고 한다)으로, 소비자는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95%의 소비자가 이미 웹브라우저가 장착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컴퓨터 생산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MS에게 소비자가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MS는 소매업체에게 웹브라우저가 포함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으며, 더 많은 선택을 주기보다는 공급을 적게 하기로 결정한 듯이 보인다. 컴퓨터 생산업자에게는 MS의 계획이 잠재적으로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컴퓨터 생산업자는 MS가 무료로 지원해주는 IE와는 다른 다양한 웹브라우저 중에서 어느 것을 설치할지 결정할 수 있다. 만약 MS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판단된다면, 위원회

는 소비자가 웹브라우저 시장에서의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원회는 MS의 장기간에 걸친 끼워팔기 행위를 염두에 둘 것이다. 또한 IE와 Window의 분리가 MS의 또 다른 계획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발전으로 인해 웹브라우저는 비즈니스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편, 소비자 선택의 결핍으로 인해 웹브라우저 시장의 기술 혁신이 쇠퇴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지난 1월에 SO를 MS에 제시했다. SO에는 MS의 IE 끼워 팔기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SO에는 위원회가 MS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간주할 경우, 소비자가 IE를 비롯한 다른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끝낼 수 있는 개정안도 제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MS가 최종 소비자에게 웹브라우저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MS가 소비자에게 일종의 '스크린 투표'를 윈도우를 통해 공급해 소비자가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잠정적인 개정안을 도출해냈다.

위원회는 2009년 1월 15일 SO를 MS 측에 전달했다. SO는 위원회의 독점금지법 수사에 있어서 형식적인 단계로, SO를 접수한 기업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반박형식의 서한을 회신할 수 있는데, MS는 2009년 4월 28일 위원회 측에 답장을 회신했다. 현재 위원회는 MS 건 처리와 관련해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지는 않고 있다.

(2009년 6월 12일, EU위원회)

••• EU · 독일 •••

## 한국과 경쟁법 협력방안 공동 체결·시행 및 Grunenthal과 Infectopharm의 의약품 가격인상협의 철회 수용



**E**U위원회는 한국과 EU가 이번에 공동으로 체결한 '한·EU간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 시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이번 협정안은 EU와 한국 경쟁관리당국 사이의 효과적인 경쟁법 제정과 시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정안은 상호원조와 법률 시행에 있어서의 동등성과 정기적인 상호회의를 포함하고 있다. 닐리 크로스 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정안은 효과적인 경쟁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를 상대로 한 독점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최근 10년간 국제교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세계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독점행위에 대한 위협은 상승했고 독점행위는 다른 국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경쟁당국의 제재가 다른 국가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안의 다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할구역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시행의 통보
- 경쟁당국이 다른 경쟁당국에게 법률 시행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 상호원조
- 법률 시행에 있어서의 동등성
- 기밀 이외의 정보 공유
- 각 경쟁당국의 주기적인 회의 조직

(2009년 5월 25일, EU위원회)

**독**일의 제약회사인 Grunenthal GmbH가 Infectopharm GmbH와의 가격협의를 연방카르텔청에 통보하는 등 관련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카르텔청은 두 회사에 의한 약품가격 상승을 막고 각각의 약품에 대한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Grunenthal은 보험회사 측에 가격담합 결과로 부과된 초과요금에 대해서도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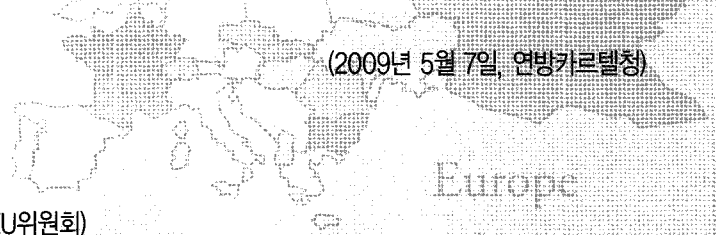
Grunenthal은 불법적인 가격협의로 인해 인상된 가격을 절감하고 협의 이전의 가격으로 환원하는데 동의했으며, 최근 보험회사 측에 인상된 가격으로 인해 발생된 초과요금을 환불해줄 것을 약속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연방카르텔청은 형량완화정책과 더불어 Grunenthal의 전폭적인 정보 협조에 따라 벌금 청구를 철회했으며, Infectopharm도 인상된 가격을 취소했다.

연방카르텔청의 중재 이후에는 Infectopharm 역시 보험회사 측에 인상된 가격으로 피해를 본 요금을 지불해 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이번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재정상으로 크게 나타나지 않아 별도의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5월 7일, 연방카르텔청)



◆ ◆ ◆ 특 일 ◆ ◆ ◆

## Tubingen 대학병원과 Zollernalb 지구 합병 파기



**연**방카르텔청은 Tubingen 대학병원과 Zollernalb 지구의 합병을 파기했는데, Tubingen 대학병원과 Zollernalb 지구가 합병을 취소하자 이들에 대한 자산박탈을 중지했다.

이들의 합병은 연방카르텔청에 사전 통보 없이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진행됐지만, 연방카르텔청은 2007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합병 관련 통지를 받았고, 이는 연방카르텔청이 자산 박탈을 시작하는 원인이 되었다.

연방카르텔청에 의하면 이번 Tubingen 대학병원과 Zollernalb 지구의 합병은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두 단체의 지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파기되어야 했다는 것이었으며, 두 단체의 합병 파기는 연방카르텔청의 자산 박탈 시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Albstadt에 위치한 Balingend 병원과 Hechingen 병원은 2003년까지 Zollernalb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3년 말 Zollernalb-Klinikum gHmbH 병원이 설립되면서 Tubingen 대학병원과 Zollernalb 행정구역은 Zollernalb-Klinikum 병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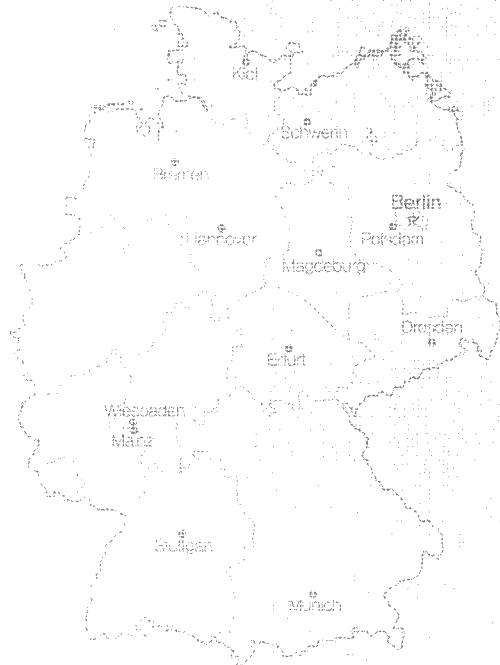
Balingen에 위치한 병원경영회사인 Hechingen und Albstadt도 2004년 초에 Zollernalb-Klinikum에 위탁됐다.

연방카르텔청은 병원분야에서 진행된 이번 합병에서 생산시장을 병원시장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보편적인 병원과 전문적인 진료소를 포함했지만 재활 시설과 요양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고려했을 경우에 병원시장은

Tubingen 지역과 Zollernalb 지역이 포함된다. 연방카르텔청의 조사 결과, Tubingen 대학병원과 Zollernalb 병원은 이미 관련 시장의 60%를 장악한 상태로 합병 전에 이미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다른 경쟁세력의 견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그들의 시장점유율 상승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반적인 Zollernalb와 Tubingen의 시장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009년 5월 14일, 연방카르텔청)





## 유제품 생산기업 Humana와 Nordmilch 합병



**연**방카르텔청이 Humana Milchindustrie GmbH와 Nordmilch AG의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두 기업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사의 합병 이후에는 'Nord Contor GmbH'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Nord Contor는 향후 유제품시장의 33%를 선점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경쟁기업들에 비해 다소 지배적인 위치에 점유하게 되는 것이다.

독일내 유제품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합병으로 인해 시장을 독점해 경쟁성을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Nord Contor는 소위 말하는 우유를 기반으로 하는 상품 즉, 대량의 유제품(乳製品)에 의해 생산되고 분배되는 상품에 주력할 계획이다.

독일 내에서 Humana와 Nordmilch의 경쟁기업은 거대기업인 Campina/ Friesland Group과 Ehrmann and Danone이다.

Humana와 Nordmilch는 소매시장 내에서 다양하고 강력한 기업들의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쟁기업들은 두터운 구매층과 브랜드 역량으로 합병 이후에 야기될지 모르는 독점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경쟁기업들은 가공식품산업에서도 소비자층을 보유하고 있다.

Nord Contor는 생(生)우유(미살균우유)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농업조합과 독일낙농조합은 유제품 공급업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소송을 요구했지만, 연방카르텔청 입장에서는 합병이 진행된 이후에도 유제품 공급업자들은 여전히 여러 지역에 걸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우유시장의 포화상태로 인해 여타의 유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드문 상황이지만, 이런 사유로는 현재의 시장상황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병을 반대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연방카르텔청은 여러 반대의견과는 달리 합병 이후에 유제품시장에 지배적인 위치에서 가격을 조정, 다른 경쟁업체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판매부문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여전히 유제품 생산업자들이 점유할 수 있는 지역시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두 개의 주요 유제품업체의 합병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 일본 ◆◆◆

## 세븐일레븐-재팬에 배제조치명령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Seven Eleven-Japan(이하 "Seven Eleven"이라 한다)이 독점금지법 규정 제19조(불공정거래방법 제14항우월적 지위의 남용) 제4호)에 위반하는 행위로 함으로써 동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배제조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취인위원회는 Seven Eleven이 거래상 지위는 가맹사업자(Seven Eleven 프랜차이즈 체인에 가맹한 사업자)에 대해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통해, 가맹점(가맹자가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폐기된 상품의 원가 상당액을 가맹자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퇴장상품 중 유(乳)제품(매일 점포에 납품되는 상품)과 관련한 단념판매(Seven Eleven의 독자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유통기한에 다다른 상품에 대해 판매 가격에서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는 가맹자에 대해 단념판매를 중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취인위원회는 가맹자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에 기초한 폐기와 관련해 유제품의 원가 상당액 부담을 경감하는 기회를 잃게 한 Seven Eleven에 대해 배제조치명령을 내렸다.

(2009년 6월 22일, 공정취인위원회)

